

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

제 1 민 사 부

재판절차안내

사 건 2024가합203828 (본소) 청구이의
2024가합203835 (중간확인의소) 청구이의
[원고 김중학 / 피고 성원·오피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조합
외 1]

원고 김중학 (귀하)

피고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로 담당변호사 김강연 (귀하)

피고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평 담당변호사 선병욱 (귀하)

재판절차안내사항

1. 이 법원은 2024. 9. 24. 이 사건에 대한 판결(이 사건 판결)을 선고하였고, 원고는 2024. 9. 25. 이에 대한 추가재판을 신청하였습니다. 이 법원은 위 신청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2024. 10. 15.을 판결선고기일로 지정하였습니다.
2. **만약** 이 사건 판결에 재판의 누락이 있어 추가 재판을 할 경우,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1항이 "법원이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재판을 누락한 경우에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그 법원이 계속하여 재판한다."고 규정하고 있으므로, 누락 부분에 한정하여 추가 재판을 하여야 합니다.
따라서 이 사건 판결은 누락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는 종국판결에 해당하므로 누락부분과는 독립하여 확정됩니다. 그 결과 당사자가 항소를 원할 경우 이에 대하여 별도의 항소기간 등의 절차를 준수하여 항소하여야 합니다.
나아가 재판의 누락을 인정하여 추가판결을 할 경우 이는 누락한 청구에 대하여 별

개의 종국판결로 하는 것이므로, 독립하여 상소할 수 있습니다.

3. 만약 이 사건 판결에 재판의 누락이 없어 소송종료선언을 할 경우, 원고가 주장하는 재판의 누락 부분도 이 사건 판결로 전부 종국판결이 선고된 것이므로 당사자가 항소를 원할 경우 위 종국판결에 대하여 항소기간 등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.
4. 따라서 어느 경우에 해당하더라도, 원고가 이 사건 판결에 항소를 원할 경우 위 판결이 해당 청구에 대하여는 종국판결임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항소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.
5. 원고가 제출한 2024. 9. 28.자 및 같은 달 30.자 참고서면은 그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로 이해할 여지가 있습니다.

만약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, 참고서면을 제출한 원고의 의사가 서면의 제목대로 참고용일뿐 항소의 취지가 아니라면, 다시 한번 이를 명확히 한 서면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4. 10. 2.

재판장 판사 박 종 열



※문의사항 연락처 :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민사부 법원주사 김경희
직 통 전 화 : 031-737-1211
팩 스 : 031-742-2004 ksy04300@scourt.go.kr

등본입니다.

2024. 10. 2.

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

법원주사 김경희

